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레저세 개요	2
2. 개정안 검토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필요성 검토	7
(3)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시 지원 방식 검토	10
(4) 부칙 검토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7. 10.
3. 회부연월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민원 및 교통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해당 시·군·구에 각종 추가적 행정비용과 재원이 추가 지출되고 있음.

그럼에도 ‘레저세’가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레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에 불과한 징수 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경마·경륜·경정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의 재정압박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레저세 개요

레저세는 과세대상인 경마, 경륜, 경정, 전통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과세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함)임.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임.

레저세는 1961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된 마권세에 기원을 두고 있음. 승마투표권에 과세하던 마권세는 1942년 국세로 신설되었으나, 지방재정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유흥세, 입장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1961년 지방세로 전환되었음.

마권세는 지방세 이양 이후 시·군세로 과세되어 오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경마장이 서울특별시 독섬에서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된 후 과천시에 과도하게 재정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9년 도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마권세는 1994년에 경륜·경정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면서 경주·마권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2년에 청도군의 소싸움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게 된 것임.

우선 레저세 세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레저세의 세수는 발생 장소에 따라 ① 본장 발생분, ② 장외발매소⁴⁾
발생분, ③ 온라인 발생분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레저세 업종 본장·장외발매소 현황]

업종	본장	장외발매소
경륜	3개소: 광명경륜장, 창원레포츠파크, 부산금정경륜장	17개소: 서울 중랑·동대문·장안·성북·강남·관악, 부산 광복·서면, 인천, 경기 수원·분당·산본·부천·시흥·의정부, 충남 천안, 경남 김해
경정	1개소: 미사리경정장	16개소: 서울 강남·관악·동대문·중랑·장안·성북, 부산 광복·서면·금정, 인천, 경기 분당·시흥·의정부, 충남 천안, 경남 김해·창원
경마	3개소: 서울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부산경남 경마공원	28개소: 서울 강동·강북·도봉·동대문·선릉·영등포·종로·중랑·청담, 부산 동구·연제, 인천 미추홀·부평·연수·중구, 대구, 광주, 경기 광명·광주·구리·분당·수원·시흥·안산·의정부·일산,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통 소싸움	1개소: 청도소싸움경기장	-

자료: 각 업종별 홈페이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4) 본장 이외에 투표권을 발매하는 장소를 의미함.

이 중 ① 본장 발생분은 그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② 장외발매소 발생분은 본장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5:5로 안분되며, ③ 온라인 발생분은 본장 소재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5:5로 안분됨.

다음, 광역자치단체에 안분된 세수의 일부는 징수교부금·조정교부금으로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됨. i) 징수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세 수납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가로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⁵⁾에 따라 세수의 3%가 교부됨. ii)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⁶⁾에 따른 것으로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세수의 20%가 교부됨.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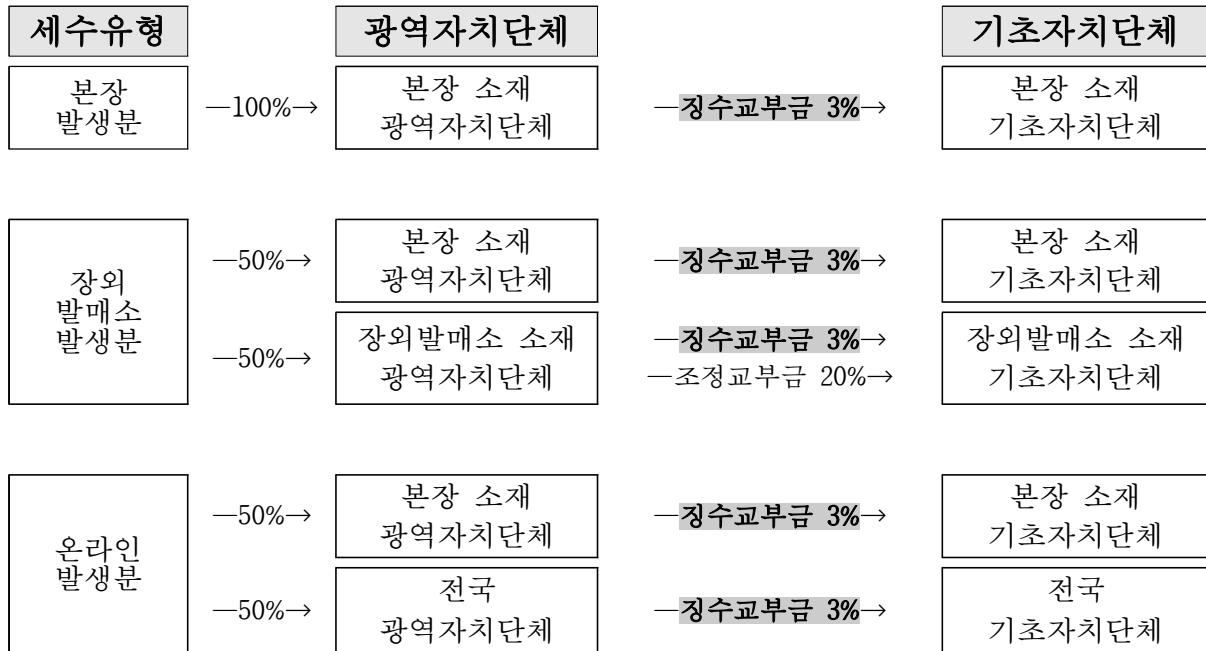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6)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레저세 세수의 안분 흐름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정안은 경마, 경륜·경정, 전통소싸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소음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해당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된다는 인식 하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징수교부금의 효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2)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 필요성 검토

레저세 부과대상 업종의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는 크게 ①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와 ②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됨.

이 중 ②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납액의 20%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2022년 신설되어 입법 취지가 일정 부분 충족된 상황임.⁷⁾

그러나 ①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장외발매소에서 교통혼잡·소음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유발된다면 본장에서도 유사한 외부효과가 유발될 수 있음에도 2022년 조정교부금 신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겠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레저세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행정비용이 크지 않아 현행 징수교부금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⁸⁾

행정안전부는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장외발매소 발생분 및 온라인 발생분의 50%가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안분되는 과정에서

7) 개정안은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구분 없이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취지는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8)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행정안전부 의견조회 과정에서 별도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이를 대신 수납받으면서 그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어 충분한 재원이 교부되고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3년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음.

[2023년 레저세 업종 본장·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교부금]

(단위: 백만원)

구분	업종	기초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수납액 3%)	조정교부금 (수납액 20%)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	경륜	경기 광명시	2,194	-
		경남 창원시	418	-
		부산 금정구	380	-
	경정	경기 하남시	1,078	-
	경마	경기 과천시	6,999	-
		부산 강서구	1,583	-
		경남 김해시	1,583	-
	전통소싸움	경북 청도군	75	-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	경륜	서울 중랑구	121	769
		서울 중구	57	372
		서울 동대문구	164	1,065
		서울 성북구	80	495
		서울 강남구	62	367
		서울 관악구	101	626
		부산 중구	34	222
		부산 부산진구	41	244
		인천 중구	57	367
		경기 수원시	89	493
		경기 성남시	140	856
		경기 군포시	64	407
		경기 부천시	93	518
		경기 시흥시	63	375
		경기 의정부시	65	393
		충남 천안시	74	435
		경남 김해시	31	160
	경정	서울 강남구	24	141
		서울 관악구	65	414
		서울 중구	28	179

구분	업종	기초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수납액 3%)	조정교부금 (수납액 20%)
		서울 중랑구	45	286
		서울 동대문구	54	347
		서울 성북구	42	265
		부산 중구	17	109
		부산 부산진구	24	144
		부산 금정구	22	139
		인천 중구	38	245
		경기 성남시	57	342
		경기 시흥시	56	357
		경기 의정부시	27	162
		충남 천안시	38	230
		경남 김해시	13	65
		경남 창원시	26	133
	경마	서울 강동구	319	2,129
		서울 강북구	221	1,473
		서울 도봉구	202	1,348
		서울 동대문구	261	1,738
		서울 강남구	273	1,820
		서울 영등포구	607	4,049
		서울 종로구	101	671
		서울 중랑구	188	1,256
		부산 동구	157	1,044
		부산 연제구	161	1,071
		인천 미추홀구	62	411
		인천 부평구	100	668
		인천 연수구	188	1,252
		인천 중구	107	714
		대구 달성군	233	1,555
		광주 동구	454	3,024
		경기 광명시	256	1,707
		경기 구리시	173	1,153
		경기 성남시	405	2,697
		경기 수원시	289	1,929
		경기 시흥시	249	1,663
		경기 안산시	260	1,735
		경기 의정부시	253	1,685
		경기 고양시	370	2,466
		경남 창원시	515	3,431
		충남 천안시	92	613

자료: 행정안전부

(3) 기초자치단체 지원 확대시 지원 방식 검토

개정안은 레저세 대상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식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확대를 선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 징수교부금은 시·도세를 기초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적 성격의 금전이며, 그 밖의 사유로 지방세 징수액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안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⁹⁾ 제도를 활용하고

9)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신설 2024. 2. 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

있음. 이에 2022년 신설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아닌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 것임.

따라서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방식은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4) 부칙 검토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음.

시행일의 경우, 개정안은 레저세의 수납이 월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교부도 광역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달리 정하고 있으나 통상 분기 또는 월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일을 “0000년 1월 1일”이 아닌 “공포한 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목차 (3)의 의견과 같이 지원 방식으로 징수교부금이 아닌 조정교부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정교부금은 통상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여 매년 예산안에 편성한 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교부하는 구조이므로 시행일을 “0000년 1월 1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¹⁰⁾

적용례의 경우, 징수교부금 또는 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인 레저세의 수납은 “과세표준(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금) 발생 → 세액 신고 및 납부”의 2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정법률 적용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법 개정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¹¹⁾

10) 참고로 2022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신설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음.

「법률 제18657호 지방재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333

-
- 11) 참고로 2022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신설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법률 제18657호 지방재정법」 부칙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